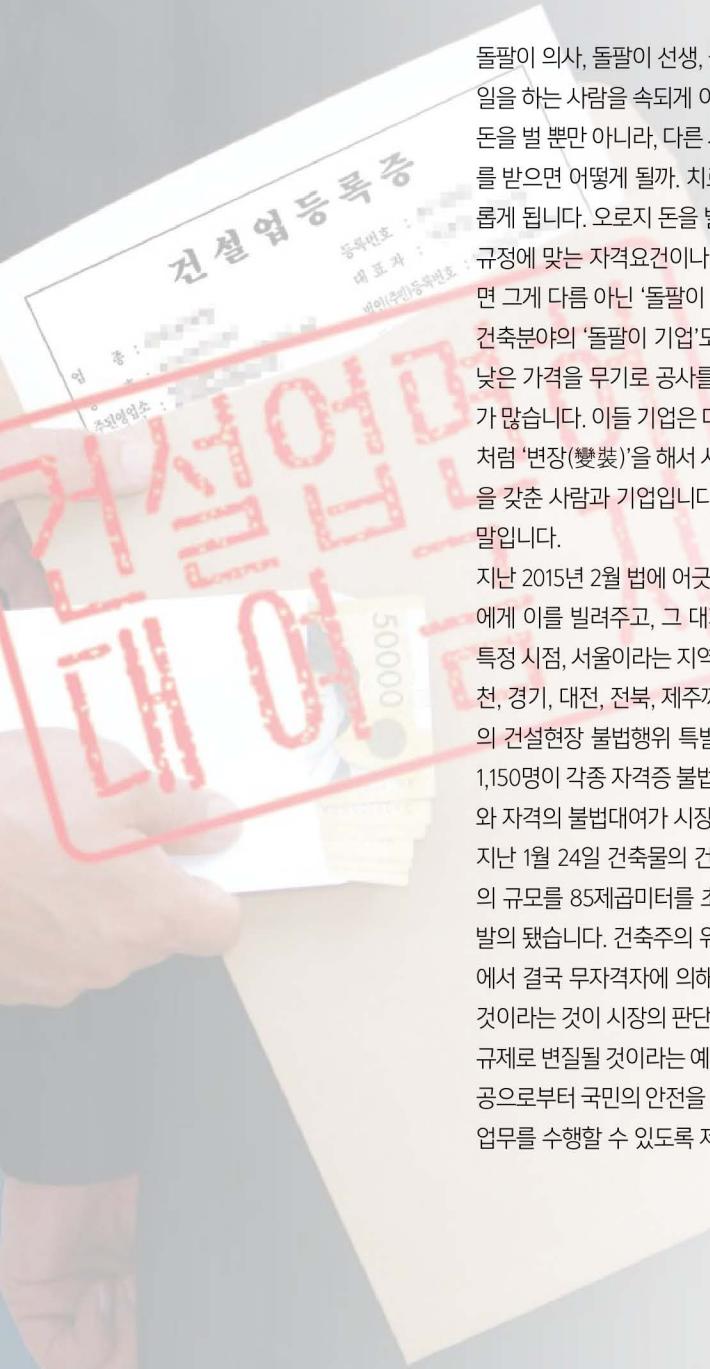


건설시장과 조삼모사(朝三暮四)

Building Industry Today, and Mocking Qualification

글. 백민석 · 본지 편집국장

돌팔이 의사, 돌팔이 선생, 돌팔이 무당… ‘돌팔이’란 제대로 된 자격이나 실력이 없이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돌팔이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릇된 방법으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팔이 의사에게 잘못 진료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치료는 고사하고 병을 더 키우기 쉽고, 심지어는 환자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됩니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아동바등하는 기업들 중에도 수많은 돌팔이가 존재합니다. 규정에 맞는 자격요건이나 사업 수행능력을 갖추지 않고 일감을 얻은 뒤, 그 대가로 이득을 보면 그게 다름 아닌 ‘돌팔이 기업’ 아니겠습니까?

건축분야의 ‘돌팔이 기업’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제대로 된 기술력 없이 낮은 가격을 무기로 공사를 수주한 뒤 자취를 감추거나 이 곳 저곳을 떠돌며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빌려 마치 올바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처럼 ‘변장(變裝)’을 해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이들을 뒤에서 지원하는 세력은 바로 면허와 자격을 갖춘 사람과 기업입니다. 면허나 자격을 빌릴 곳이 없다면 돌팔이들이 변장할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증(면허)을 발급 받은 후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이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백억 원을 쟁진 일당이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는 특정 시점, 서울이라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해도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대전, 전북,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3개월간 진행된 경찰청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총 974건, 2,566명이 적발됐는데 이 중 44.8%에 이르는 1,150명이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로 적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건설관련 면허와 자격의 불법대여가 시장에 만연해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범위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 발의 됐습니다. 건축주의 위장직영을 문제 삼은 것인데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만연한 상황에서 결국 무자격자에 의해 시공이 이루어질 것이고 등록증 대여료만 추가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판단입니다. 입법의도와는 관계없이 실효성 없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규제로 변질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위장직영과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대여에 의한 무자격자 시공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건축주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인 감리(監理)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